

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7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」, 「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목표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등 관련 법령 개정
에 따른 조례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우선구매 대상기관 개정
- 나.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세부내용 개정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없음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6. 5. 19.~2026. 6. 8.(20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장애인복지과

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2조제2항”을 “「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다른 법령과의 관계)”를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및 다른 조례에서”를 “다른 조례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하남시”를 “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설로”를 “시설에서 구매하여야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 따른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행정복지센터 및 하남시의회
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

제7조제2항 중 “의한” 을 “따른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” 을 “「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,” 를 “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르며” 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탁월한” 을 “뛰어난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노인장애인복지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 선 미
	팀장 직위 · 성명	장애인복지팀장 김 선 아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최 민 희 (031-790-571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중증장애인”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	<삭 제> -----
2.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	2. -----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 ----- ----- -----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	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 ----- --- 다른 조례에 ----- ----- ----- ---.
제5조(우선구매 대상물품) ① 시장은 하남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	제5조(우선구매 대상물품) ① --- ---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----- -----

품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한다.

제6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, 보건소, 시립도서관, 동 행정복지센터 및 하남시의회

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

<신 설>

제7조(우선구매 의무) (생략)

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

-----.

② -----

--- 시설에서 구매하여야 ----
-----.

제6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-----

-----.

1. 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 따른 시 본청, 직속 기관, 사업소, 행정복지센터 및 하남시의회

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-----
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

제7조(우선구매 의무)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따른 -----

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8조제1항의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8조(우선구매 촉진계획)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우선구매촉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,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.

③ · ④ (생략)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우선구매 촉진계획) ① ---
--- 「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르며 -----

-----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평가 및 표창) ① (생 략)	제10조(평가 및 표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<u>탁월한</u> 기관·단체·법인·개 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뛰어난</u> ----- -----.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약칭: 중증장애인생산품법)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138호, 2025. 11. 11., 타법개정]

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24. 2. 6.>

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2. 6.>

1.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
2.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

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13., 2024. 2. 6.>

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4. 5. 20., 2018. 3. 13., 2024. 2. 6.>

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 <개정 2011. 8. 4., 2014. 5. 20., 2018. 3. 13., 2024. 2. 6.>

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8. 3. 13., 2024. 2. 6.>

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

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애인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2. 8., 2018. 3. 13., 2024. 2. 6.>

부칙 <제21138호, 2025. 11. 11.> 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호 중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3”을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4”로 한다.